

자 체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농업기술원 자체감사 —

2022. 6.



2. 처분요구일람표

1.	연구소 생산물 판매대금 세입조치 부적정 (주의)	1
2.	피복 구입 부적정 (주의)	3
3.	법인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주의)	5
4.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7
5.	공공운영비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9
6.	경북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강사료 원천세 미징수(주의)	10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소 생산물 판매대금 세입조치 부적정
소 관 청 농업기술원
관 계 부 서 ○○○○○○○○○○○○
내 용

농업기술원 ○○○○○○○○○○에서는 과채류 육종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22조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 수입금출납원은 세입이 되는 수입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년 연구소 직원들에게 생산물(참외)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3,248천원을 현금으로 수납 받고도 기한 내에 도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4개월 후에 납입하는 등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표] 생산물(참외) 판매 내역

- 이하 생략 -

조치할 사항 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 세입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수납금을 금고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피복 구입 부적정
소 관 청 농업기술원
관 계 부 서 ○○○○○○○○
내 용

농업기술원 ○○○○○○○○에서는 원활한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3조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로 피복비 지급 시 업무 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 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해야 하며,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복비는 근무 중 상시 착용할 복장이 필요하거나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집행되어야 하고, 피복은 개인적 용도나 해당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최근 3년간 3,900천원의 피복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매장에서 당초 구입한 피복으로 물품 검수 사진을 찍어 지출결의서에 첨부하고 실제로는 당초 구입한 피복이 아닌 다른 피복으로 교환하여 수령하는 등 피복비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표] 2019 ~ 2021년 피복 구입 내역

- 이하 생략 -

조치할 사항 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피복을 구입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소 관 청 농업기술원
관 계 부 서 ○○○○○○○○
내 용

농업기술원 ○○○○○○○○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업무추진비 결제 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예금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부서장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전결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검색 등)을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일에 이용대금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결제일 전에 결제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결제대금이 정당하게 결제되지 않게 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법인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내역

- 이하 생략 -

조치할 사항 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 카드 대금결제일 전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결제금액이 지연 결제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농업기술원
관 계 부 서	○○○
내 용	

농업기술원 ○○○에서는 원활한 행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3조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예규)」 제3조에 따르면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을 제공하거나 내방객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기관 방문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이나 홍보기념품 등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구입단가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

여야 할 기념품(10건, 44,794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하였다.

[표] 2019 ~ 2021년 기념품 구입 내역

- 이하 생략 -

또한 홍보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조청, 다기세트, 스카프 등을 최소 30,000원에서 최대 33,000원의 단가로 구입하여 내방객이나 타 기관방문 시 기념품 등으로 제공하였다.

그 결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과도한 경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홍보용 기념품 등 물품이 홍보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운영비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농업기술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농업기술원에서는 원활한 행정활동 수행과 청사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를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에 적용되며 건물, 기계, 기구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는 시설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상북도농업기술원 ○○○ 등 2개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 환경제어 전원 전기공사’ 등 10건 143,251천원을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설비가 아닌 공공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세출예산 집행내역

- 이하 생략 -

조치할 사항 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세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강사료 원천세 미징수
소 관 청 농업기술원
관 계 부 서 ○○○○○○○○
내 용

농업기술원 ○○○○○○○○에서는 경북 정보화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과 정보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아래 [표1] 과 같이 (사)AAA 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1] 「□□□□□□□□ □□□□」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보조사업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계	도비	자부담
	계			68,800	61,000	7,800
2019	(사)AAA	□□□□□□□□	- 정보화 특강	38,000	33,000	5,000
2020		□□□□	- 정보문화 교류 및 화합한마당	30,800	28,000	2,800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르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르면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사)△△△△△△△△△△△△△△에서 “2019년, 2020년 □□□□□□□□ □□□□”를 추진하면서 125,000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100분의 60을 공제한 금액의 20%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부과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10%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강사수당 총 3,500,000원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2] 와 같이 소득세 280,000원, 지방소득세 28,000원 총 308,00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고 실적보고를 하였는데도 시정 조치 없이 보조금액을 정산 확정 하였다.

[표2] 강사료 원천징수 미공제 현황

- 이하 생략 -

조치할 사항 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각종 수당의 원천징수 이행 및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